

출원중인 사용상표도 보호

특허청(www.kipo.go.kr)은 오는 7월1일부터 제 출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출원인에게 손실보상 청구 권을 인정해 출원중인 사용상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표등록전에 출원중인 상표는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다른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업무상 손실이 발생해도 구 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특허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키위해 상표법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출원공고전이라도 상표등록출원 사본을 제시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 청구권을 통해 상표를 보호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지역명 상표 출원前 보호

오는 7월 1일부터 잘 알려진 지역이름으로 만들어진 상표는 등록 출원전부터 사용돼 식별력이 있을 경우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하거나 등록을 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해당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정해 국제출원을 할 경우 우리나라 상표 등록 출원이 국제등록일에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1월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표법 개정공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인터넷 등에 공개된 기술정보에 관한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간주, 특허나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개정공포안도 통과시켰다.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유명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하는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법 개정공포안도 의결했다.

이들 산업재산권 관련법안은 모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오는 4월 1일부터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분야의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기반 조성을 주도하고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출처 매일경제

부정목적 사용 소지있는 kr도메인은 등록 못한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kr 도메인은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또 도메인 등록인이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 도메인을 운영했거나 도메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해당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메인 무효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도메인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 NIC), 도메인 분쟁협의회, 법조인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도메인 이름 분쟁처리 규정(안)을 마련, 주소 위원회의의 심의와 KRNIC 이사회의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도메인 이름 분쟁처리 규정(안)은 법적 효력을 갖는 문건은 아니지만, 도메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서 이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분명해, 앞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사람과 제 3자간의 도메인 이름 분쟁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규정(안)에는 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등록인이 도메인을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인이 고지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 도메인 이름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조항은 등록인이 다른 사람의 상표권 등을 침해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정한 목적 없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경우와 도메인 이름을 비영리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최소한 3년 이상 사용했거나 도메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경우는 도메인 이름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www.aaa.co.kr을 aaa사가 아닌 제 3자가 등록할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특히 이 도메인을 판매할 목적으로 등록했다면 aaa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3년전에 이 도메인을 등록해 사용했다면 aaa사에서 해당 상표권을 갖고 있더라도 등록인이 도메인을 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정(안)에는 도메인 분쟁을 해결할 분쟁조정 기구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 현재 민간기구로 설립하는 방안과 대한상사중재원,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위원회 등 유사 분쟁조정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 KRNIC 내부에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은 중재의 효력과 관리, 도메인 등록에 관한 행정적 관리적 기술적 문제 해결에 국한한다는 점에서 다른 분쟁조정과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도메인 분쟁을 조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행법상의 상표법과 부정경쟁 방지법 등의 규율을 받게 돼 도메인 분쟁과 관련해 기존의 상표권자나 영업권자의 이해에 치우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또 기존의 도메인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인 UDRP나 세계지적 재산권기구가 내린 도메인 분쟁 판결이 대부분 선점수, 선등록이라는 도메인 등록 기본권리와 배치되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와 도메인 분쟁 관련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통부 도메인담당 채향석 사무관은 .com이나 .net 등 최상위 도메인(gTLD)의 분쟁을 조정하는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측에서 국가도메인인 .kr의 분쟁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지만,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며 한국형 도메인 분쟁처리 기준과 함께 별도 기구를 마련해 도메인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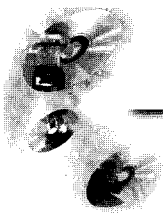
‘해외 유명상표 도메인 등록 후 다른 영업하면 상표권 침해 안돼’

해외 유명기업의 상표를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이용, 흡소평업을 했더라도 유명기업의 서비스등록과 다른 상품을 팔았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棼 부장판사)는 8일 미국의 페더럴 익스프레스 코포레이션과 (주)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가 남경우씨를 상대로 “원고 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한 www.fedex.co.kr 도메인 등록을 취소하라”며 낸 표장사용금지등 청구소송(2000가합3718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선 상표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이용, 똑같거나 비슷한 상품 판매에 사용해야 된다”며 “남씨는 Federal Export Trading Co.’라는 자신의 상호로 페더럴익스프레스사의 운송관련업과는 달리 자동차 부품의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그 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이 없어 상표권침해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씨의 자동차부속품 수출·판매 업무는 페더럴익스프레스사의 FedEx’표장의 지정 서비스업인 화물운송업 등과 관련이 없어 부정경쟁방



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페더럴익스프레스사는 남씨가 99년2월 www.fedex.co.kr라는 도메인을 등록 자동차 부품 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자 자신들의 고유한 상표인 'FedEx'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출처 법률신문

“판매상품 다른 유사 도메인 상표권 침해로 볼수 없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부장판사)는 운송택배 업체인 페더럴익스프레스사가 '유사한 상호와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자동차부품 수출업자 남모씨를 상대로 낸 표장(標章)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도메인 이름(fedex.co.kr)과 상호(Federal Export Trade Co.)가 페더럴 익스프레스사가 등록한상호인 'fedex' 및 'federal express'와 동일한 부분이 있으나 판매상품이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씨는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부품 등을 판매하고 있어 페더럴익스프레스사와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동아일보

숯의 의약적 용도

* 숯은 탄소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는 다공성 구조로서, 흡착력이 강해 유해 세균이나 약취를 제거하고 음이온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을 제공한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숯은 단순한 연료를 뛰어넘어 훌륭한 의약 자원으로 상용화될 전망이다. 98년 이후 숯의 의약적 용도에 관한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은 4건으로 숯에 대한 연구 또는 산업재산권화가 본격화하는 추세이다.

1. 숯의 구조와 효과

숯이란 “신선한 힘”이란 뜻을 지닌 우리말로써 목재를 600~900℃의 온도에서 일차적으로 탄화시킨 것이다. 숯의 주요 구성성분은 탄소가 85%이고 수분이 10%이며 미네랄이 3%이고 휘발 성분이 2%이다. 숯을 탄화시킬 때 내부에 작은 구멍들(기공)이 생기게 되는데, 의약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600~900℃의 온도에서 같은 공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된다. 이를 활성화 공정이라고 한다.

(1) 흡착 효과

숯은 제조 과정에서 형성된 아주 작고 수많은 구멍으로 되어 있고 넓은 표면적(1,200 m²/g)을 가지고 있다. 이 작은 구멍은 크기가 다양하고 이것은 액체 상태로 된 여러 가지 물질을 흡착하고 결합시킬 수 있는 장소(binding site)를 제공하게 되므로 숯이 흡착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 음이온 방출 효과(부패 방지 효과)

숯의 구성 성분인 탄소는 원자핵속의 양성자수는 6개이고, 전자수 6개, 최외각 전자수가 4개인 원자이다. 그러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강한 공유결합 구조가 아니라, 많은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자장을 형성하여 음이온 상태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숯은 음이온을 방출하여 물질의 부패(=산화: 전자없는 현상)를 억제시킨다.

(3) 미네랄 방출 효과

목재속의 0.3%~0.6% 정도의 미네랄 성분은 숯을 제조할 때 4~5배로 농축된다. 숯에는 칼슘, 칼륨, 철, 인, 나트륨, 등 5대 미네랄 외에 구리, 아연, 망간, 마그네슘, 크롬, 몰리부덴 등이 함유되어 있다. 이런 미네랄 성분이 노화 방지 작용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2 의약품 원료로 사용

차콜(Charcoal)이라 불리는 숯가루는 아주 작은 미세한 입자로 된 작은 입방체로써 현미경으로 보면, 수많은 미세한 구멍(세공)이 있다. 세공은 소화되지 않고 장내에서 부패하는 단백질 찌꺼기와 지방 알갱이 및 인체 내부의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들을 흡착하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혈관 내의 혈액과 체액이 깨끗하게 되어 병에 대한 저항력이 생긴다.

식용숯(숯가루)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오랜전부터 의학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서양에서는 히포크라테스시대에 간질, 혈기증, 빈혈, 탄저병 등의 치료에 이용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프랑스 화학자 베르낭은 숯의 해독 작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치사량의 150배에 해당하는 비소 5g을 숯과 함께 먹었다고 한다.

동양의 한방에서는 주로 소나무(赤松) 숯가루를 이용하여 중풍(뇌졸중), 소갈증(당뇨)등 열성 질환을 치료하였고 민간에서는 어린이 경끼 등에 사용하였다. 백초상이나 송인목을 비롯해 각종 숯을 약으로써 왔다. 백초상이란 일명 당묵이라하며 '얕은 검정'이라고도 하며 솔 밑에 검은 그으름을 말하며, 송인목이란 소나무를 태운 숯과 아교를 섞어 만든 숯먹을 말한다. 그러므로 숯은 가정 필수 상비약 구실을 했다.

이러한 숯의 효능에 대해 데이비드 쿠니(David Coony) 박사는 "Activated Charcoal"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숯은 진통작용, 해열작용, 담배의 니코틴 제거, 자동차 배기가스 제거, 농약성분(파라치온)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위염, 위궤양, 간염 치료와 간염의 예방에 유효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3 관련 특허 동향

숯의 의약적 효과와 관련한 연구를 특허출원 건수를 통해 분석하여 볼 때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93년 이후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숯 관련 의약품의 출원은 모두 12건으로서 이 중 일본이 7건 한국이 4건 그리고 미국이 1건이다. 숯을 의약적 용도로 활용하는 분야에서 일본이 가장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발명의 내용에 있어서도 일본 특허는 당뇨병, 신후증, 빈혈, 염증성 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숯을 이용하고 있음에 비해, 국내 특허는 단순한 건강 증진용 식품 첨가제 및 피부미용 조성물 등 한정된 분야에만 숯을 이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은 吳羽化學工業株式會社를 비롯한 기업에서 전문적으로 숯의 의약적 용도를 연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한의사나 숯 생산업자들만이 간헐적으로 숯의 의약적 용도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음이온과 미네랄 덩어리인 숯은 앞으로 그 사용량이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숯은 주로 산업, 농업 및 공예용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숯의 의약적 용도에 관한 연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숯은 훌륭한 의약 자원으로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발특2001/2-3